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0. 12. 15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0년 11월 12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0년 11월 19일

라. 상정일자: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0. 12. 7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국장 이형삼)

가. 제안이유

- 영등포구 한시기구(미래비전추진단)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미래도시 영등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한시기구 존속기한 개정(안 부칙 제2조)

- '2020년 12월 31일'을 '2021년 12월 31일'로 개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○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금융특구 및 의료특구 사업, 교육정책 사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등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,

○ 검토결과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에 위배되지 않으며, 영등포구 미래 성장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갖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85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0. 11. .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영등포구 한시기구(미래비전추진단)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미래도시 영등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.

2. 주요내용

가. 한시기구 존속기한 개정(안 부칙 제2조)

- '2020년 12월 31일'을 '2021년 12월 31일'로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지방자치법 제11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, 제13조

- 2020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

나. 협의사항

1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
2) 인권영향평가: 원안동의

3) 예산수반사항: 해당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

5) 행정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0.10.29.(목) ~ 11.03.(화) / 5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135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“2020년 12월 31일”을 “202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조례 제135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	조례 제135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
제2조(한시기구)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<u>2020년 12월 31일까지</u> 로 한다.	제2조(한시기구) ----- ----- - <u>2021년 12월 31일</u> -----.